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39 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정일영·진성준·강준현

박수현 • 박희승 • 민형배

박민규 · 임미애 · 박상혁

한민수 · 임광현 · 권향엽

김성환 · 허성무 · 정진욱

박해철 의원(16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를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,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하고 있음.

그런데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, 해당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적기에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음.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,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움.

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2항 본문 중 "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"를 "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해당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, 예측이 불가능했을 것
- 2.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한 지출 사유가 있을 것
- 3.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사유가 있을 것
- 4. 이 · 전용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것
- 5.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

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관 중앙관서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그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 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 도부터 적용한다.

#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1조(예비비의 관리와 사용) ① 제51조(예비비의 관리와 사용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② -----다음 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 한 때에는 그 이유와 각 요건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에 대한 소명-----야 한다. 다만,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| 제20조의 규 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 초로 긴급구호, 긴급구조 및 복 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(概 算)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. 1. 해당 회계연도 예산 편성 <신 설> 시, 예측이 불가능했을 것 2.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한 <신 설> 지출 사유가 있을 것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• ④ (생 략)

및 국회제출) ① ~ ④ (생 략)

<신 설>

- 3.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사유가 있을 것
- 4. 이 · 전용 등 다른 방법을 통 해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것
- 5.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 능할 것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- 제52조(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제52조(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  - ⑤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관 중앙관서의 예비비 사용 내역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 지의 그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.